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8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신설 (김미애의원안)	3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5.
- (3) 회 부 일 : 2025.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

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 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및 제4호 바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신설 (김미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근로소득·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 규정(제12조제3호)	☐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신설(제12조제3호커목 신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현행과 같음)
- 가. ~ 처. (생략)	- (현행과 같음)
-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
☐ 연금소득 중 비과세소득 규정(제12조제4호바목 신설)	*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 ~ 마. (생략)	- (현행과 같음)
-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연금
	*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시행일 :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김미애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89)

☐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퇴직금¹⁾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 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함. 그런데 현행법상 퇴직 시점에 이연된 세금을 퇴직소득세의 형태로 납부해야 하므로, 노후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수용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퇴직소득²⁾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등으로 구성됨. 이러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음.

또한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체해 일정 기간(또는 종신)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 방식으로, 납입 당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수령받게 됨.

- 개정안에 따라 퇴직일시금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은퇴 초기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령 가구는 은퇴 전후로 의료비·거주비용·비소비지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됨.³⁾ 따라서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면, 은퇴 초기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규모 지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또한 퇴직일시금은 재직 기간에 걸쳐 누적된 이연보상(deferred compensation)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퇴직일시금의 일부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연도에 조세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개정내용은 다음의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고령 인구⁴⁾의 재정 상태 등을

3) “은퇴가구의 소비행태 분석”, 보험연구원, 2012.

4)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감안할 때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⁵⁾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2020년 22명 수준에서 2067년에는 102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⁶⁾. 또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⁷⁾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음.

5) 연합뉴스, “한경연, “한국 저출산 고령화속도 OECD중 가장 빨라””, 2021. 3. 3.

6) 한국보험연구원,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 20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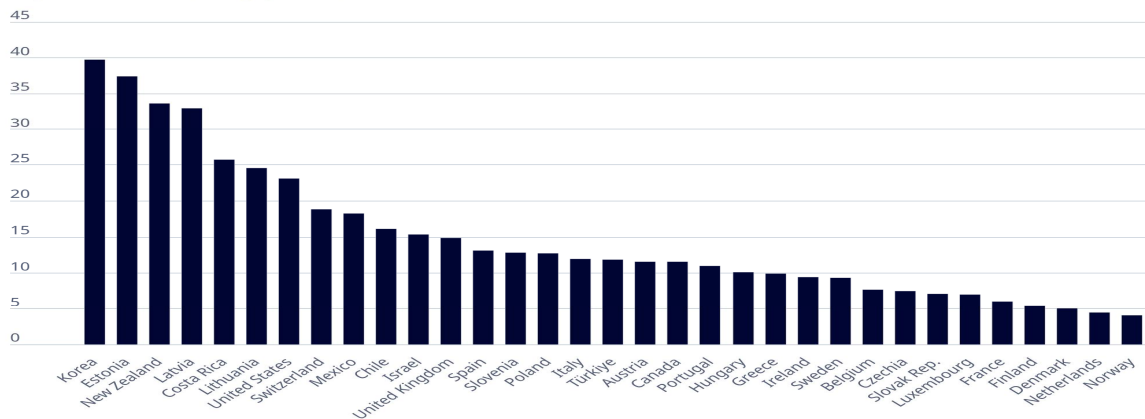
7)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OECD 국가별 빈곤율 비교]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1	대한민국	39.7	14.9	12	영국	14.9	11.8	23	아일랜드	9.5	7.0
2	에스토니아	37.4	16.2	13	스페인	13.1	13.7	24	스웨덴	9.4	8.4
3	뉴질랜드	33.7	14.3	14	슬로베니아	12.8	7.9	25	벨기에	7.7	6.9
4	리투아니아	33.0	16.9	15	폴란드	12.8	9.1	26	체코	7.6	6.2
5	코스타리카	25.8	21.0	16	이탈리아	12.0	12.2	27	슬로바키아	7.2	9.4
6	리투아니아	24.6	14.1	17	튀르키예	11.9	13.2	28	룩셈부르크	7.0	8.9
7	미국	23.1	18.1	18	오스트리아	11.6	9.6	29	프랑스	6.1	8.3
8	스위스	18.8	10.7	19	캐나다	11.6	11.9	30	핀란드	5.5	6.7
9	멕시코	18.3	15.0	20	포르투갈	11.0	11.2	31	덴마크	5.0	6.3
10	칠레	16.2	16.3	21	헝가리	10.1	9.9	32	네덜란드	4.4	7.1
11	이스라엘	15.3	16.8	22	그리스	10.0	11.2	33	노르웨이	4.1	8.0

Poverty rate

66 year-olds or more, % of population, 2022



Source: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 OECD

자료: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주: 순위는 빈곤율 기준

OECD의 빈곤율 정의: 해당 연령층의 가처분 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

이는 현 세대 고령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율, 낮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 고령층의 근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퇴직연금 일부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둘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에 치우친 노후보장 제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 연금소득 대체율은 31.2%로, 공적연금소득 만으로는 은퇴 이전 소득의 1/3 수준에 불과함.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함.

[주요 국가의 연금소득대체율]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OECD 평균
소득 대체율	31.2%	39.2% (81.3%)	21.6% (49.0%)	60.2%	41.5% (55.7%)	32.4% (55.4%)	42.2% (51.8%)

주1: 공적연금 기준이며, 괄호는 강제민간연금(Mandatory Private)와 자발적 가입연금(Voluntary)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주2: 다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은 OECD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 OECD and G20 Indicators」 p. 141, 2021. 12.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중 현재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외에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도 각각 2043년과 2031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과 204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⁸⁾,

이러한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8)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예산정책처, 2022. 8.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세지원을 통한 연금계좌납입액의 증대 및 이를 통한 사적연금의 강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연금 납입액 대비 세제 지원액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19.7%인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 40.9%, 일본 31.0%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요 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 및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가입률	17.0%	67.9%	56.5%	66.0%	54.0%	32.6%
세제지원율	19.7%	40.9%	31.0%	21.3%	23.7%	28.2%

자료: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 한국 vs G5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22. 1.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일시금,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받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령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등 타 법률에 규정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의 범위, 근속연수 등 비과세요건, 비과세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범위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 퇴직급여 등의 비과세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퇴직급여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소득자가 단기간 일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지급방식 간 상호대체성이 있음. 즉 동일한 퇴직급여를 지금 한 번에 확정 과세로 받을지(퇴직일시금), 차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지(퇴직연금)에 대해 결정함에 따라 다른 방식의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임. 따라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범자의 입장에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